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금 연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easylaw.go.kr>) 을 구축하여 2017년 5월 현재 서술형 238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6건의 생활법령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 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A

Q1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요? 만일 위반했다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A1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기와 처벌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경고그림의 경우는 앞면과 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및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4호, 2016. 6. 22. 발령, 2016. 12. 23. 시행)].

처벌규정

■ 담뱃갑에는 경고그림뿐만 아니라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표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Q2 전자담배. 정말 무해한가요?

A2 아니요. 무해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란?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

현재 제조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제품자체에 대한 관리와 제품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카트리지가 액상에 니코틴 외에 성분의 안전성·위해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제조 회사 간 및 동일 제품 간에도 카트리지가 액상 내 니코틴 성분의 차이, 라벨에 표기된 성분 및 함량과 실제 포함된 내용물의 차이 또는 기화되는 양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출처: 금연길라잡이-흡연바로알기-담배해부하기-담배의 종류-전자담배).



Q3 담배는 누구나 판매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대표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영업소 거리제한

-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Q4 담배도 담배자판기로 판매 할 수 있나요?

A4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첫째,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둘째,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셋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입니다. 이때 흡연실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성인인증장치

■ 담배자판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이러한 것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Q5 담배광고는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는 광고를 하지 않나요?

A5 담배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담배광고 허용범위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③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같은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Q6 금연클리닉은 병원인가요?

A6 아닙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이용방법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상담서비스와 금단증상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총 9차례로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패치와 같은 금연보조제도 12주 동안 제공하며 나머지 6개월은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관리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서비스

Q7 금연캠프는 금연클리닉과 무엇이 다른가요?

A7 금연캠프는 중·고도 흡연자들은 위한 치료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전문적인 금연서비스입니다.

- 전국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연캠프는 중·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박 5일간 병원 금연지원센터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받으신 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10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일반형 캠프도 있습니다.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금연동기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알림-자주하는 질문-서비스 신청/이용-금연서비스 유형 및 대상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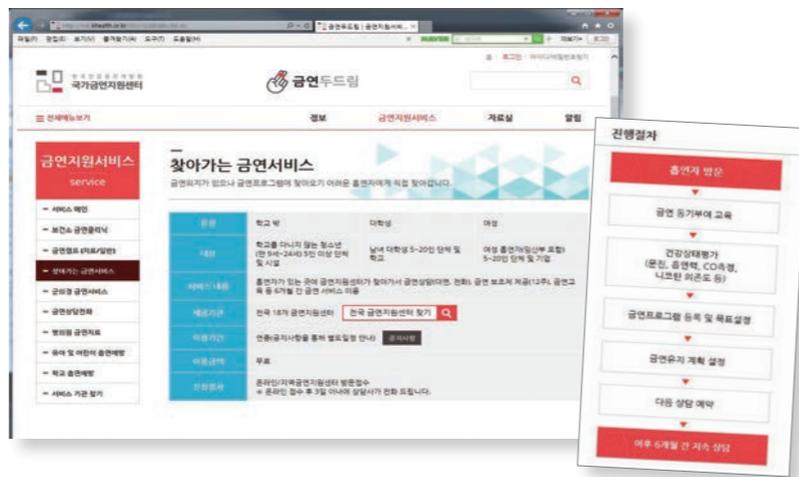


Q8 흡연자에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도 있을까요?

A8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위해서 전국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 전국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5인 이상 단체 및 시설, 남녀 대학생 5~20명 단체 및 학교,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흡연자 5~20명 단체 및 기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대면·전화를 통한 금연상담, 12주 동안 금연 보조제 제공, 금연교육 등 금연서비스를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알림-자주하는 질문-서비스 신청/이용-금연서비스 유형 및 대상안내).



Q9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9 주민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지정요건

1.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신청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